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

전문공보담당자 인권보호관 황정현

전화 051-520-4361

보도자료

2023. 3. 22. (수)

제목

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사업체자금을 빼돌리고 근로자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구속 기소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- ☑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,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(제11조 제1항)
- ☑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미리 공개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(제11조 제2항 제2호)의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 공개금지정보

-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(부장검사 김종필)는 근로자 18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억5,000만원을 체불한 사업주를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오늘(3. 22.) 구속 기소하였음
- 피고인은 배우자의 사망으로 사업체 경영을 맡게 되자 차명계좌 등으로 사업체자금을 빼돌리고 5개월 만에 사업체를 폐업한 후 잠적하는 등 근로자들의 임금을 악의적으로 체불한 것으로 확인되었음
- 검찰은 재산을 은닉하고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하여 근로자들의 신속한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임

1

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

- 피고인
 - A○○(46세, 부산 소재 B기계부품제조업체 대표, 상시 근로자수 28명)
- 공소사실 요지
 - '22. 3. B업체 소속 근로자 18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약 4억5,000만원 미지급[근로기준법위반·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]

2

수사 경과

- '23. 2. 20. 노동청, 사전 구속영장 신청(검찰 청구) / 2. 23. 발부
- '23. 3. 22. 검찰, 구속기소

3

수사 결과

-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노동청과 적극 협력하여 금융자료 분석 등을 통해 A○○이 사업체채산을 차명계좌로 송금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은닉하고 근로자들의 임금을 악의적으로 체불한 사실을 확인하고, 검사가 직접 구속전피의자심문에 참석하여 구속의 필요성을 적극 소명하였음
- A○○은 남편의 사망으로 B업체를 경영하게 되자, 수년간 근무해온 경리 직원을 해고하고 친인척과 지인에게 자금관리를 맡긴 후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사업체채산을 은닉하고 근로자 임금과 거래처 미수금을 지급하지 않았음
 - ※ A○○은 사업체자금 1억2,000만원을 현금 인출하여 은닉하는 등 약 2억7,000만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반면, 현재까지 근로자들은 대지급금(체당금) 5,700만원을 지급받은 외에는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상황
- A○○은 사업체자금을 빼돌리고 정상적으로 운영되던 B업체를 5개월 만에 폐업한 후 약 9개월 간 잠적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임
 - ※ A○○은 검찰 조사시 “인출한 현금을 B업체 채무에 변제하였다”고 주장하며 관련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, 수사 결과 지인이 A○○의 부탁으로 허위 작성해준 사실을 확인하였음

4

향후 계획

- 검찰은 앞으로도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재산조사를 강화하여 지불능력이 있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, 재산을 은닉한 사업주에 대해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하여 근로자들의 신속한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임 ☑